

제352회 정례회
2016. 11. 24.(목)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박우양 의원 등 7인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6년 10월 31일
- 회부일자 : 2016년 11월 02일

3.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인용 법조항 변경(안 제10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나. 기금의 존속기한 관련 조항 개정(안 제11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 삭제에 따라 제11조 조항 후단 삭제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제출 배경

-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은 긴급 재해구호, 노인 및 장애인복지증진, 저

소득자녀 장학사업 등을 위한 것으로, 2015년도 말 22,095,679천원이 조성되어 있음.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2015. 12. 10)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한 규정 내용을 변경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부분을 개정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10조제1항제2호는,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의를 인용하는 것이 문맥상 타당한데, 같은 조 제11호 “기준 중위소득”을 인용한 바, 이를 바로잡은 것으로 타당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안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2015. 12. 10)으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가 삭제된 바, 이에 따라 기존 조례 제11조 후단에 규정되었던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는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타당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 삭제 <2015.12.10.>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